

계룡 문화의 집 및 읍사 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230 호
의결년월일	2005. 9. . (제 18 회)

제출일자	2005. 8. .
제출자	계 룡 시 장

1. 제정이유

-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 「지방자치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생활속의 문화 공간인 계룡 문화의 집 및 읍사 문화쉼터를 조성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계룡 문화의 집 및 읍사 문화쉼터의 목적규정(안 제1조)
- 계룡 문화의 집 및 읍사 문화쉼터에서 운영관리 할 시설내용과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제4조)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주체와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8조)
-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안 제9조, 제10조)

3.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05. 6. 20 ~ 7. 9(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 의견제출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5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의 2

계룡 문화의 집 및 읍사 문화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계룡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 및 읍사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①문화의 집은 계룡시 남선면 남선리 957-8번지 남선면사무소에 둔다.

②문화센터는 계룡시 두마면 읍사리 280번지 읍사지하도에 둔다.

제3조 (시설) ①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1. 문화정보자료실 : 도서, CD, 비디오 등을 비치 열람 할 수 있는 공간
2. 문화시청각실 : 인터넷, 영상,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공간
3. 문화창작실 :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연습 및 창작, 취미교실 공간
4. 문화사랑방 : 문화예술 단체, 동아리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
5. 문화관람실 : 공연, 전시, 영화상영, 문화강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6. 안내데스크 : 문화의 집 이용 안내
7.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문화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1. 전시공간 : 각종 미술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2. 독서실 :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
3. 디지털룸 : 게임,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4. 무대 : 음악, 연극 등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5. 민원실 : 문화센터 이용 안내
6. 기타 문화센터의 기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 ①문화의 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
3. 문화예술의 활동 정보자료 제공
4. 기타 시민의 문화향수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문화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전시, 공연 등 활동에 필요한 장소제공 등 행정지원
2. 도서 및 CD, 인터넷 자료 이용 관리
3. 문화쉼터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
4. 기타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관리) 운영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관리) ①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수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문화의 집 및 문화쉼터의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수탁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와 시설 사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그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수탁자 선정) ①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자 선정에 관하여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정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법령과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비 지원)시장은 문화의 집 및 문화쉼터의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①시장은 문화의 집 및 문화쉼터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관계 법규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5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2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조의2 (문화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문화시설의 종류(제1조의2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영화상영관을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진흥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2) 영화진흥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나. 미술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술관

다. 화랑 :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관

가. 도서관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나. 문고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가. 문화의 집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

협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복지회관 :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기타 각종의 관련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다. 문화체육센터 :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5. 문화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기타 문화시설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문화시설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